



제6장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의 지정

6.1 종합평가 산정절차

6.2 종합평가 결과

6.3 안전등급 지정



제6장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의 지정

6.1 종합평가 산정 절차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구조물 부재의 결함 및 손상에 대하여 평가기준 및 상태평가기법에 따라 수행한 상태평가 결과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개별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시설물에 대한 종합평가는 상태평가만 실시하거나 또는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를 각각 실시한 후 이들 결과를 기초로 종합하여 이루어진다. 즉, 상태평가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태평가 결과를 종합평가 결과로 같음하여 상태평가 결과가 종합평가 결과로 결정되지만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가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상태평가 결과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최종적인 종합평가 결과를 부여하게 된다.

본 장에서는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에 대하여 상태평가 결과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객관적이고 정량적이며 통일성 있는 종합평가가 이루어지고 합리적인 종합평가 결과가 결정될 수 있도록 종합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그 평가방법 및 절차를 수립한다.

금회 안전성평가는 전회차 안전성평가자료에 대한 검토 및 분석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상태로 확인되어 안전성평가 결과는 전회차 안전성평가결과로 같음하였다.

$$\text{종합평가결과 산정} = \text{MIN (상태평가결과, 안전성평가결과)}$$

6.2 종합평가 결과

남조천교(부산, 춘천)에 대한 상태평가 및 전회차 안전성평가 검토결과를 토대로 산정된 종합평가결과는 양방향 모두 “B”로 평가되었다.

【표 6-1】 종합평가 결과

구 분	상태평가 결과		안전성평가 결과		종합평가결과 Min(상태평가, 안전성평가)
	결함도점수	결과	최소 안전율	결과	
남조천교(부산)	0.198	B	1.15	A	B
남조천교(춘천)	0.228	B	1.16	A	B

6.3 안전등급 지정

대상시설물에 대한 상태평가, 안전성평가(전회차 안전성평가 검토 및 분석내용 같음) 및 종합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정된 안전등급은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인 “B”등급으로 지정되었다.

【표 6-2】 안전등급 지정

구 분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종합평가	안전등급
남조천교(부산)	B	A	B	B등급
남조천교(춘천)	B	A	B	B등급